

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라자드코리아투자일임(주)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“법”) 제58조,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,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라자드 그룹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아래의 수수료를 말한다.

- 수수료 :

-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회사는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는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특히, 법 제98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 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(성과수수료 계산방법 포함)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③ 회사는 투자일임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

다.

제6조(설명의무)

회사는 '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'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'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'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시 및 통보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준의 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

제 1 조 (개정일) 이 기준은 2024 년 3 월 20 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